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

○ 제안일: 2026. 11. 10.

○ 회부일: 2026. 11. 12. (의안번호: 26-132)

2. 제안이유

○ 경제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감염 확산 감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대상(안 제2조)

- 경제 및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4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확대
- 기존 경제 취약계층은 의료·생계급여자 →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
- 기존 건강 취약계층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까지 확대하여 지원

나. 예방접종 비용(안 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안 제8조)

-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10. 15.~11. 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경제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감염 확산 감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대상자를 기존 “생계 및 의료급여,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중앙정부 부처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상위법과 충돌여부를 살펴보면 개정조문 관련 저촉사항이 없으며 경제 및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4세의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0~14세 및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대상자 확대로 대상 범위는 기존(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6,298명에서 7,422(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소요예산: 124,000천원 (기존 71,000천원 + 확대 53,000천원)

- 매년 반복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독감)는 감염 확산률이 높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넓은 사각지대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다만 기존 대상의 접종률이 34%임을 감안하여 불용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김영임 (9060)	최수미 (9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안 제2조(예방접종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2항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2조(예방접종대상)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증진과 유효선
연 락 처	02-3153-9074

참 고 자 료

1.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자치구별 무료예방접종 현황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성남시) 비교

(2026.8.31. 기준)

자치단체			인플루엔자(독감) 자체접종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1	중랑구	2그룹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13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강북, 노원, 도봉, 강서, 구로, 금천, 관악 강동구	3그룹	의료급여,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전공상 군경/ 가족)
	3	마포, 영등포, 송파구	4그룹	의료 및 생계급여,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	서대문, 양천, 강남 동대문, 성북구	6그룹	기초생활수급권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2	동작구, 서초구	7그룹	기초생활수급권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희귀질환자
	1	양천구	7그룹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기도	1	성남시	전체	주민 전체(국가지원 대상 외) 지원 자체접종위해 매년 69억원 예산소요